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설비분야 반영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 분야인 녹색건물에 차지하는 설비건설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설비건설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 결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우리 설비분야가 포함되었고,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및 업체 육성정책에도 설비 등 시공분야가 반영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협회가 추진했던 기계설비기준법의 제정 목적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반영시킨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협회는 금년에도 기계설비 시공 및 유지관리기준 등 기계설비의 주요 내용이 제대로 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관련 협회 추진 결과

### ■ 추진현황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정 ('12.2.22, 시행 '13.2.23)
  - 녹색건축물법안에 기계설비기준법의 기계설비 발전방안 반영추진
- 국토해양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12.9.19)
-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협회 의견 제출 ('12.9.27)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설비 기본계획 반영
  - 녹색건축물 시공 및 유지관리기준에 설비분야기준 반영
  -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설비기술인력 포함
  - ※ 녹색건축과 및 건설인력기재과 기계직 배치 건의

### ■ 추진결과

- 국토해양부 내에 기계설비발전방안 협의를 위한 창구설치
  - 녹색건축과에 기계직 주무관 배치('12.10월)
  - 건설인력기재과에 기계직 사무관 배치 ('13.1월)
- 국토해양부, 우리협회 의견수용 회신공문 접수('13.1.4)
  -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설비 등 시공분야 지원·육성정책 필요
- 법제처 법률심사('13.1월), 차관회의('13.2.8), 국무회의('13.2.12)
  - 우리협회 의견 반영을 위해 법제관 설명 및 변호사 의견서 제출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공포('13.2.20), 법률시행('13.2.23)

○ 협회의견 반영내용

-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업체 육성정책 수립

※ 시행령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신설

-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에 시공분야 전문 기관 포함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관련 협회 반영 내용

국토해양부 제정안	최종 확정안
<p>(신 설)</p>	<p>시행령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li> <li>2. 녹색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li> <li>3. 녹색건축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업체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li> </ol> <p>※ 국토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법 제6조) -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건축기계설비 포함</p>
<p>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 향후 고시제정 시 기계설비분야 협의 반영</p>
<p>시행령 제13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교육을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생략)</li> <li>4. 그 밖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li> </ol>	<p>시행령 제13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녹색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생략)</li> <li>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녹색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등의 교육을 실시할 인력, 시설 및 교육과정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li> </ol> <p>※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에 시공분야 포함</p>